

1. 개정이유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 시 서면 제출 등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재발급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 신청 방식도 병행 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내 자격정보 확인 및 자료 활용으로 훼손된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를 생략하며,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 원본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제2호로 정비하여 병행 유지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재발급 사유 명확화 및 증빙서류 규정(안 제5조제2항 및 단서)

- 자격증 분실·훼손 외에 '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를 재발급 신청 사유로 명시하고, 성명 변경 신청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전자적 재발급 신청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제1호)

-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다. 전자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안 제5조제2항제1호 관련)

-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내 자격정보 확인 및 자료 활용을 통해 훼손된 자격증 원본 및 별도 사진 제출 절차를 생략함
- 라. 서면 신청 방식 병행 운영(안 제5조제2항제2호)
-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민원인을 위해 기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자격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과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제2호로 정비하여 병행 유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
 2.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 가.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 1장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 · 재발급) ① (생략)	제5조(치유농업사 자격증의 발급 · 재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치유농업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 -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 ----- . 다만, 성명 변경을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 <u>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u>	1. <u>농촌진흥청장이 구축 ·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u>
2. <u>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u>	2. <u>별지 제5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u> 가. <u>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u> 나. <u>사진(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u>
3.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u>	<삭 제>